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진실 살인, 은폐, 조작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목차

- 범대위 발간사 _5

- 유가족 인사글 _6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진실 10문 10답

1. 사건의 발단이 된 용산 4구역 재개발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_7

2.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_9

3. 개발지역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개발지역 세입자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_11

4. 용산 참사의 배후에 삼성물산, 포스코, 대림산업 등 건설재벌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_13

5. 용산 살인진압 참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_15

6. 2월 9일, 검찰은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경찰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_17





발간사

7. 1월 20일 경찰의 진압작전에 용역업체 직원이 기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 용역업체는 어떻게 개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폭력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19
8. 많은 시민들이 추모대회에 모여 이명박 정부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어떠한 요구를 해야 할까요? 21
9. 최근 국회에서 입법발의 중인 서민 죽이는 MB악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3
10. 검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전철연을 외부세력으로 규정, 개발 지역에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입자/철거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5
- 2월 9일 검찰수사결과 문제점_진상조사단 27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이 소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해를 굳이 해라고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검·경찰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해를 구름이라 합니다. 해를 구름이라고 거짓말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수많은 의혹들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 20일 용산철거민들이 정부가 투입한 경찰에 의해 살해된 후, 검찰은 살인의 책임을 모두 철거민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결과 검찰 수사결과발표는 마치 3류 소설처럼 추측과 억측 투성이입니다. 철거민들을 옥상 망루로 올라가게 한 원인들, 즉 재개발을 둘러싼 복마전, 용역깡패의 폭력, 정부 개발정책의 문제들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산 참사는 용산 4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을 허물고 있는 재개발지역 전체의 문제라는 것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범국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양심적인 언론의 노력으로 용산참사의 진상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거짓과 탄압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살인진압의 책임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결코 역사의 과제로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투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용산철거민 살해는 철거민뿐만 아니라 노점상, 노동자, 농민 등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용산참사 규탄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연쇄살인사건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책자가 낱낱이 밝히고 있는 진실의 목소리를 전파하여 진실의 합성으로 압도해 버립시다. 그리고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 용산 살인참상의 진상을 규명하고, 살인책임자들을 처벌합시다. 그리고 그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정권을 단죄합시다.

– 2009년 2월 20일,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유가족 인사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27명의 검사와 10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하여 검찰이 밝혀낸 것은 경찰과 용역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우리 철거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도, 구속된 철거민의 가족 입장에서도,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점점 언론과 여론의 중심에서 멀어져가는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마다가 함께 해 주시던 분들 모두 다 지쳐서 떠나시고 우리 유가족들만 영안실에 남겨지는 것은 아닐지,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 우리 다섯 유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매일 끈질기게 모여 촛불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유족들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유가족들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끝까지 가볼 것을 다짐합니다.

철거민 다섯명과 경찰 한명이 죽었습니다. 고귀한 백성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경찰 관계자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유족들과 철거민들에게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이다. 안타깝다” 그런 말은 사죄가 아니죠, 사과가 아닙니다. “무리하게 진압한 것 잘못했다. 무분별한 재개발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것 미안하다. 앞으로는 시공사와 용역들 편만 들지 않겠다. 세입자들을 위해 정당한 보상과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유가족들의 한이 풀리지 않고 참담한 마음이 수습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우리 철거민들을 매도하고 불법폭력 운운하며 돌아가신 분들을 욕되게 하고 살아남은 분들은 감옥에 가두고 있으니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어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 고마움과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되갚지 못하더라도 그 은혜를 세상에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용산철거민 열사 유가족 일동

1

사건의 발단이 된 용산 4구역 재개발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용산 화재참사는 막가파식 개발 사업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용산 4구역(한강로 3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의 개발 사업은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통상 4년 정도가 걸린다는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조합 설립 이후 고작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협의할 기회도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조합과 건설사가 밀어붙이는 개발과정에서 용산구청은 생떼거리를 쓰지 말라며 세입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민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세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거세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주거이전비 4개월분이 고작 1천 4백만 원에 불과하고 상가 세입자 평균보상비가 2천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구역지정고시는 2006년 4월에 났지만 용산 4구역의 상가세입자들은 철거가 시작된 2008년 7월에서야 보상금 액수를 통지 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공사와 조합은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을 몰아내기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명도소송도 끝나지 않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살림살이를 용역업체가 강제로 들어내고 강제철거를 자행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용산 4구역에서 철거용역업체가 상주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거나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온갖 폭력이 횡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적인 철거과정에서 공포와 불안에 떠는 주민들에게 경



2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찰과 구청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용역업체의 폭력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상가세입자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금의 문제, 단골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온 관계가 해체되는 문제, 지역의 성격이 바뀌면서 재입주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업종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즉,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계를 아예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막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절차도 모두 차단되어 있고 구청은 가난한 세입자는 주민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봐주는 건설사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계를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꾸려나갈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장사하며 이어온 생계를 어떻게 다시 이어갈지 막막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선택은 이런 일방적인 개발에 저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산 참사의 배후에는 바로 조합-시공사-용역업체-구청-청와대가 함께 밀어붙이는 막파 개발 정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용산참사의 본질은 가난한 이들을 내쫓고, 이윤만 추구하는 이명박식 막파 개발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2년 ‘도심광역개발’의 형태로 시작한 것이 이른바 ‘뉴타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구상하던 각종 개발 규제완화와 개발이득보장책이 ‘특별법’의 지휘를 얻게 된 셈입니다.

현재 서울 35개, 경기 13개 등 전국 60여 지역이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 수도권 20여 곳에 추가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만 재개발 299개 구역, 재건축 266개 구역이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어 소형, 저가, 다가구/단독 등 기존주택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대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역에서 삶을 이루어가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을 단기간에 이주시켜야 하는 전면철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지역 곳곳이 제2, 제3의 용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오랫동안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던 다수의 영세 가옥주들과 세입자들을 개발유량민으로 전락시킵니다.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율이 10~20%(길음뉴타운 17%)에 불과한 현실은 80%이상의 주민들이 개발로 원치 않은 이주를 하게 만듭니다.

3

개발지역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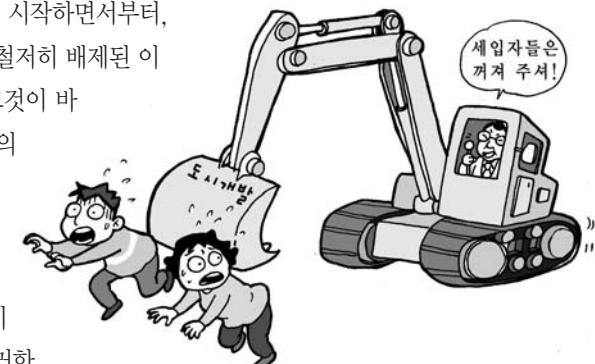
개발지역 세입자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특히 뉴타운지역 원주민의 절대 다수는 세입자라는 점을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전체 뉴타운지구의 세입자 비율은 72.5%에 달하고 있는데, 서울뉴타운지역의 임대주택은, 거주세입자에 비해 불과 16.4%정도만 건립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중대형 아파트 일색으로 건축 예정이여서, 원주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개발취지와는 전혀 다른 소수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개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와 생태라는 걸포장만 씌운 채, 더욱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뉴타운개발에 신중을 기하는 듯하면서도,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해 전과 다름없이 역세권 광역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참사로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속도조절론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제기되고 있는 중에도, 민간 사업자에게 자금융자 확대하는 조례와 뉴타운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또 다른 지역에서의 참사를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서울 디자인 올림픽 등 이름만 화려하게 꾸며진 개발 사업들로, 서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삶터와 일터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재개발을 가속화하여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경기 활성화는 건설재벌의 배를 불리고 폭력적으로 주민들을 몰아내는 용역업체의 일자리 보장방안일 뿐입니다. 결국 이들의 개발정책은 '도시에서 집 없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쓸어 없애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9.19주택 공급방안과 관련하여, '임기 중 무주택자를 모두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는 것입니다.

개발의 현수막이 나부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십년을 살아온 세입자들은 철저히 배제된 이방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발지역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입니다.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관계인들의 '협의'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 과정은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보다는, 자치단체장 및 관계기관의 실력자들 간의 협의에 의존하는 자본과 권력의 참여일 뿐입니다. 특히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개발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구경꾼으로라도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는 차단되고 배제당합니다.

이익독점에 혈안이 된 재개발조합과 구청은 법에 보장된 미흡한 세입자 권리마저도 손쉽게 박탈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재개발지역 주거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소액이지만 동산 이전비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이주시설에 관해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전광고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감정평가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거권과 생존권의 침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소액의 현금보상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세입자들에게 임시방안일 뿐, 개발사업 이후의 주

4

용산 참사의 배후에

삼성물산, 포스코, 대림산업 등 건설재벌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거와 생계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나마의 보상도 기준일, 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전혀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태반입니다. 하다못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마저도 개발의 현장에서는 철저히 무시되어, 보상금 몇 푼으로 내쫓기는 식으로 진행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재개발 보완대책은 문제를 덮기 위한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세입자들은 차라리 있는 법이나 잘 지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발의 현실에서는 무법천지의 횡포가 일상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횡포의 근본적 원인은 지역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 관점에서 100년을 내다보아야 할 도심 개발 사업이 민간의 이익추구만을 위한 투기의 장으로 전락된 데 있습니다. 이에 현행 뉴타운/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임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는 민간이 땅따먹기 할 금을 그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개발에 있어서의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민간개발 위주에서 공영개발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용산 4구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은 용산4구역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호남건설, 현암건설에 51억 원의 계약을 맺고 철거용역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들 거대 시공사들은 개발조합을 대신해 용역업체를 직접 관리, 감독해왔는데 이 두 용역업체는 경비업법 상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불법업체입니다. 대기업이 공공연하게 불법철거를 지휘한 것이며 더욱이 이들에게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철거 공사를 완료하도록 한 것은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용산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날이 2008년 5월 30일이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건물을 부수고 공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용역업체들은 주민들의 이주를 종용하기 위해 폭력적인 협박을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에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면 하루 510만원씩 지체보상금을 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용산4구역의 도급 계약서에는 시공사들이 살인적인 강제철거와 관련해 분명한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난한 주민들을 일시에 몰아내는 막가파 개발의 근원에는 탐욕스러운 건설재벌들이 있습니다. 6~70년대 도시 재정비와 산업화 과정에서 비대해진 건설재벌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건설시장 규모는 182조원, 건설업체 수는 6만 7,607개에 달합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평균 19.2%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입니다.

용산 4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사업비만 28조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부이며 여기에는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등 웬만한 건설재벌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삼성물산 기업 한 곳이 얻는 이익은 무려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대우증권 2008.8.21). 실제로 2001년 초대형 개발 사업이 발표되면서 용산 4구역 땅 값이 무려 10 배가 치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5

용산 살인진압 참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얼마나 많이 이익을 남기는가. 미친 듯이 펼쳐지는 개발 경쟁은 마치 스포츠게임처럼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이!라는 구호를 표방합니다. 눈이 돌아가는 광고로 소위 '가진 사람들' 을 유혹하는 한편,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용역업체를 통해 원주민들의 삶터를 자신들의 공사판으로 갈아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건설사들은 자기돈 한 푼 안들이고 시공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는 분양해서 이 돈을 갚겠다는 심보입니다. 개발이익을 바라고 무리한 투자를 시도하는 것이지요. 최근 부실 건설사의 무리한 개발과 미분양 사태는 건설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서민 혈세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 건설사의 부실을 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부동산 투기기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 금융기관이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 투자하고 이를 증권상품으로 내다파는 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즉,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 과정 자체가 투기상품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형 아파트와 고급 상

가를 중심으로 개발을 강행하는 건설사와 금
융투기세력의 핵작은 가난한 원주민을
얼마나 빨리 몰아내고 깨끗한 공사판을
만드느냐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를 통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재벌의 막가파식 개
발, 이들의 탐욕에 밀려나는 주
민들. 이제 그들만의 폭주를 멈
춰야 합니다.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철거민 5명이 1월 20일 새벽에 비명횡사했습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용산 참사에 대한 8가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진상 규명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3가지는 그 중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해 생존해 있던 사람이 왜 불에 탄 시신으로 돌아왔는가

부상자 지석준 씨는 화재발생 후 망루 가장 위층에서 故윤용현열사와 故이성수열사와 함께 옥상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MBC가 방영한 자료와 목격자가 찍은 사진에서도 망루에서 뛰어 내려 부상당한 지석준 씨와 故이성수열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故이성수열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던 故이성수열사가 사고 수습과정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故이성수열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발화원인이 화염병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가

검찰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남일당 빌딩 옥상 망루에 불이 나기 직전 망루 계단에 누군가 시녀로 추정되는 액체를 부었고, 여기에 철거민이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특공대나 농성 중이었던 철거민 중에서 신나를 뿐만 아니라 뿌리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건물 3면에서 물대포를 쏘았기 때문에 흐르던 액체가 신나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 발화자를 정확히 밝히지 못한 채 철거민들이 신나를 냇고 불을 질렀을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족 동의도 없이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신을 부검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검을 진행할 때는 미리 유족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시신확인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따돌리고 부검을 강행하는 반인륜적 행위

**2월 9일, 검찰은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경찰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를 저질렀습니다. 변사체는 유족 동의 없이 부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내세우지만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고 유족이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임에도 서둘러 부검을 실행하여 시신을 훼손한 점은 사실을 은폐하고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故이상립열사는 소지품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신원확인을 위한 부검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3가지 의혹 외에도 경찰과 용역의 공동 진압 과정, 경찰특공대 투입 경위, 안전장치 미설치 이유 등 풀리지 않는 의혹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철거민들을 폭도나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며 책임 회피에 급급할 뿐입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자진사퇴 했다고 해서 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진압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김석기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죽어간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정확한 방법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2월 9일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화 원인은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며,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경찰이나 경찰특공대 투입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용역 깡패들이 진압작전에 투입되어 소방호스를 뿌리고, 건물 내 불을 피었지만 이 역시 경찰의 책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전국철거민연합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는 대형 참사의 원인, 화재 원인, 경찰 진압의 위법성,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재개발사업에서의 최대 피해자인 철거민들을 최대 가해 집단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편파 왜곡 수사

검찰은 애초부터 용산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수사였고, 진실을 호도하는 왜곡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빌화 원인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의 위법성을 밝히기 보다는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결론을 미리 상정하고 모든 수사 결과를 여기에 꿰맞췄습니다. 전철연의 폭력성, 비도덕성을 부각시키는 정치적 수사로 경찰의 살인 진압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축소 은폐 수사

검찰은 시공사, 용역깡패, 경찰을 잘못을 덮어주고자 축소 은폐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1조 4천억 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조직 폭력배와 연계되어 있는 용역업체 역시 105억을 챙겨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시공사의 폭리와 용역 업체 간의 관계, 시공사-용역업체-경찰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용역깡패가 농성장을 합동으로 진압했다는 주장에 대해

1월 20일 경찰의 진압작전에 용역업체 직원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 용역업체는 어떻게 개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폭력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서 끝까지 부인하다가 언론에 영상이 공개되자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용역깡패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했습니다.

검찰의 억지스러운 3단 논법

검찰은 용산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발화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발화 원인을 밝히면 그 것이 곧 용산 참사의 원인이라는 단순한 3단 논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원인에 집착하게 되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무리하게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발화원인이 규명되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용산 참사의 원인이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산 참사의 근본 원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보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인 재개발 정책입니다. 재개발을 통해 수조원의 이익을 얻는 건설자본, 건설자본에 기생하는 용역깡패업체 그리고 자본과 권력의 수족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이 용산 참사의 진짜 원인 제공자들입니다.



18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진실 – 살인, 은폐, 조작...

대부분의 개발·철거현장에 용역업체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살인진압과 참사를 빚은 용산 4구역(한강로 3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은 ‘건축물 해체 및 잔재물 처리 업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명도 집행,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활동, 세입자 집회방어 등의 업무’ 명목으로 용역업체들과 계약, 이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지휘했습니다.

용역업체 및 그 직원들은 개발 전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 개발조합 임원진 선거 등 총회에서 위력을 행사, 민주적인 조합 운영을 방해하기도 하며, 2)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혹은 건물주에 대한 압박, 3) 세입자 등 주민, 상인에 대한 위협, 주거 및 생존권 등의 보장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대응, 대책위원회 사무실 철거 혹은 폐쇄, 4) 주거 관련 단체나 개인의 개입 방해 등을 직접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개발이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부담과 그 피해를 용역업체가 부담해야하는 계약조건 등으로 용역업체의 폭력과 횡포는 강화됩니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이나 상인을 위협하며 유리창 혹은 지붕을 훼손하거나 생업을 방해하고 다짜고짜 사람이 있는데도 철거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 아현뉴타운 현장 벽에 이주를 종용하는 낙서가 적혀있다.(사진: 조영권)



▲ 상도4동 개발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철거용역들(사진: 김도균)

많은 시민들이 추모대회에 모여
이명박 정부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어떠한 요구를 해야 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사 후 20여 일간 TV토론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김석기 경찰 청장 내정을 철회할 때가 아니”라며 문책을 거부했고, 오히려 철거민 6명을 죽인 게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것”이라며 “전 철연은 폭력단체”인데, “불법·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법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투쟁에 밀려 김석기가 사퇴할 때조차도 “아까운 사람 나간다.” “용산 사고가 일어나려면 늦게 나든지 했어야지 바로 터졌다”고 하며 망발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살인진압 책임자인 김석기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참사가 ‘늦게 일어났으면 괜찮다’는 논리니, 대통령 스스로 살인 정권임을 자인한 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여론조작에도 나섰습니다. “용산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 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이메일로 주문해 가슴 아픈 연쇄살인 사건을 여론 조작에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7번이나 말 바꾸기를 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메일을 보낸 행정관 한 명을 경질하는 수준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업법에 의거 관련 용역업체들이 규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 누가 투입되는지를 관할 경찰서에 ‘사전 통지’ 해야 하며, 용역 직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혹은 관련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입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및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폭력배, 아르바이트의 고용, 교육 미이수자의 투입, 불법무기 휴대,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제지 등 용역업체들이 관련법을 어기는 일이 속출하는 것은 관련 벌금, 과태료가 철거이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다, 법의 미비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철거와 같은 행정대집행 현장에 투입하는 용역업체를 경비업법에 등록되지 않은 용역업체로 할 경우 경비업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호하구요. 대신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련한 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진, 영상을 비롯 증거물을 철거민 등 피해자가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정에서 다뤄지지 못하도록 용역업체들이 각종 트집을 잡아 맞대응 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용역업체가 철거현장에 개입, 무법지대,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는 한, 힘없는 서민 대부분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악순환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철거현장에 투입되는 용역업체 및 직원들을 철저히 경비업법에 의해 규제하도록 해야 하고 경비업법 위반 시 그 처벌조항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발의 중인 서민 죽이는 MB악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참혹하게 돌아가신 고인들의 유족을 위로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청와대까지 찾아와 항의서 한을 전달하는 유족들을 전경의 방패로 막은 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아마 유족들 만나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속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폐지, 강부자 내각,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방송장악기도, 대운하강행, 경쟁몰입교육 등 이명박 정권 1년 여 동안 계속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들은 서민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오직 부자들에게만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 부자 10명이 5천 5백 8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인구의 단 1퍼센트가 전체 사유지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계속 부자들과 건설회사들 만을 배불리는 ‘도시재개발’을 강행하며 집 없는 서민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들만의 정책 속에서 용역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망루로 피해 간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의 마지막 몸부림마저 살인 진압으로 처참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이번 참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 동안의 이명박 정권의 친(親)부자 정책이 불러온 것 이기에 김석기 경찰청장의 구속은 물론 그 최종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대로 그냥 지낸다면 이후에 더욱 끔찍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아무 죄 없는 세입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다 죽임을 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쫓겨나야 하는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대로라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참사가 이후 추모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명박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만들기 위해 안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법안들을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산 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땅 투기와 재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악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 전 국토 투기화를 가져올 개발제한구역 대폭 해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에 밀려 통과시키지 못한 언론악법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조-중-동과 재벌들에게 방송을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조-중-동의 온갖 거짓과 왜곡을 TV에서도 매일 보라는 것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융투기상품 무제한 허용, 자본시장 통합법, 산업은행 민영화 등도 재벌들이 그동안 애타게 바라던 것들입니다. 한미FTA 비준안, 물·의료 민영화 법안과 의료기관 영리행위 허용 의료법 개악시도 등은 사회 양극화를 촉진할 ‘서민지옥’ 악법들입니다. 말 그대로 재벌과 투기세력에게는 무한 자유를! 경제위기의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산참사로 다시 일어나는 촛불에 밀려 노동관계법들은 2월에 상정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준비되고 있는 개악안의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짧아 실업자가 늘고 있다며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2년 뒤에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기업주들을 처벌 규제하기는커녕 4년 동안 멋대로 비정규직 부려먹다가 해고할 자유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파견허용업무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조차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외부세력 전철연’을 지목, 개발지역에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입자/철거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한편 ‘서민지옥’ 악법과 그 결과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민주악법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집단소송제’, ‘복면금지법’ 등은 인터넷과 거리에서 표현·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입니다. 휴대폰 도청 등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국정원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학살 정책이 불러올 노동자·서민의 저항을 공안 통치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며 이러한 악법을 추진 중이며 이는 MB악법 대재앙이라 부를 만합니다. MB악법 대재앙은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용산 참사의 원인을 외부세력의 개입과 불법시위 등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책임을 전가하는 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 대부분, 특히 개발지역의 주민이나 상인들은 동네가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듣긴 하더라도 관련한 법이나 세부대책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발조합이나 관할행정청 등이 주민, 특히 세입자들에게 관련 안내를 세세하게 해주고 목소리를 반영해야하지만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그 의무를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의 조정이나 필요시 대책위원회 등 당사자 모임의 결성과 운영, 기자회견, 집회, 항의방문 등을 돋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주민모임, 주거관련 철거민연합이나 NGO,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외부세력의 불법개입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혹은 분쟁조정이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자본 등 각종 노하우와 정보력, 힘으로 밀어붙이는 개발조합, 시공사, 지자체에 비해 세입자 등 주민, 상인들의 정보력, 힘, 그리고 단결력은 매우 애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동등한 협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성되더라도 압도적 다수가 개발조합의 편에 있으며 개발사업 전반을 허가해주고 감독해야할 지자체가 과연 조정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세력의 개입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개발에 짓밟히고

검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 2.9 발표된 검찰수사결과의 문제점

있는 국민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용산 참사에도 불구하고 뉴타운개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발표를 보십시오.

전국철거민연합의 예를 봅시다. 개발독재가 한창이었던 1980년대를 거쳐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진행되던 세입자대책위원회 등이 결성한 철거민단체 중 하나가 전국철거민연합입니다. 실제 전철연은 “전국의 개발지역에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과 건설사의 밀어붙이기식 강제철거에 맞서 자신들의 주거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를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구성된 지역철거민대책위원회를 바탕으로 연대적 기구로 건설된 단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철연을 외부세력이라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주민당사자조직 중 하나가 전철연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시하는 소위 ‘외부세력의 개입’ 및 당사자조직의 활동은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더 권장되어야 합니다.



- 용산철거민살인진압 진상조사단

검찰은 애초부터 철거민들의 농성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농성자들의 위법사실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짜 맞추기 수사를 전개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정부와 공권력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했으며 용산 화재참사의 진정한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여 유포하고 유족, 시민사회단체의 의혹 제기는 철저히 무시해왔으며 언론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물증을 제시하면 마지못해 수사한 뒤 처벌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왔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는 대형 참사의 원인, 화재 원인, 경찰 진압의 위법성, 용역업체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최대 피해자인 철거민들을 도심터러세력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철거민들의 불법에 대한 응징의 의지는 드높았던 반면 진압 경찰과 철거용 역업체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거나 관용을 베푸는 이중적 잣대로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사회정의를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벼랑에 서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1. 경찰특공대 투입의 위법성

〈검찰조사결과〉

- 철거민들이 화염병 투척, 새총발사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됨.
- 급박한 불법상황을 해결하고자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조치라 보기 어려움.

■ 문제점

- 용산참사 직후 경찰은 '하루 종일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 가 우려되고, '시내 중심에서 테러'라고 할 만큼 과격하고 '화염병, 염산병, 시너 난무해 도저히 묵과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의 조사결과는 이와 같은 경찰의 발언에서 한 치의 벗어남이 없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정당화했다. 검찰은 실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조사라도 했는가?
- 진상조사단의 19일 남일당 건물 주변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특공대를 긴박하게 투입할 근거는 없었다.
 - 1) 1월 19일 오전에 철거민들과 경찰과 용역의 대치 상황에서 공가의 화재발생이 1건 이외의 화재나 일반시민의 피해는 없었다.
 - 2) 1월 19일 오후에는 소강상태로 통행이 자유로웠다.
 - 3) 주변 상가와 주민들은 1월 19일 철거민들이 시민이나 차량에 무차별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의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 4) 경찰의 협상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보다는 경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해산이후의 대책 제시 없이 무조건 망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했다.
- 서울경찰청의 '농성장 진압계획' 문서에 의하면 19일 오전 9시경 경찰특공대 2개 제대 출동을 지시했다. 화염병에 대해서는 19일 오전 10시 45분에 처음 언급되었다. 즉 경찰특공대는 '화염병'이 등장하기도 전에 투입이 되었다.



▶ 19일이 테러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영상 일부이지만 20일자료임이 분명히 표시되어있다.

검찰은 19일 오후 7시경 경찰특공대 투입 작전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나, 19일 약 오후 1시경부터 오후 7시까지는 소강상태를 유지했던 시간으로 경찰특공대 투입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의 표현대로 철거민들에 의한 '도심테러'를 뒷받침할 시민들의 피해상황을 제시하지 못했다.

- 경찰특공대들의 임무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 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이다. 중요범죄란 각종 테러 및 요인에 대한 범죄 등 테러 및 인명 구조 수준의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명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반 시위 현장이나 농성 행위에 대테러진압을 주요임무로 하고 공격적 진압 방식을 사용하는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2. 철거민들 죽음 등에 대한 경찰의 직무집행에서의 과실 및 위법성

<검찰조사결과>

- 경찰이 작전수행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지 여부는 경찰의 합목적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며,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따라서 경찰이 급박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이 소진되기를 기다릴 경우 더 큰 공공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건과 같은 위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상태로 조기 투입한 조치가 위법한 조치라 보기 어려움.

■ 문제점

- 경찰이 선택한 수단과 방법이 적절한 조치였다는 검찰의 발표는 다른 유사 망루 농성 사례(오산 세교지구 등)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이러한 경찰의 진압작전은 대형참사의 결과를 빚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경찰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찰권 행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1)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한 설득과 대화 과정을 사실상 생략한 채 경찰특공대를 투입함으로써 극단적인 대치상황을 초래했다.
- 2) 진압 과정에서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
 - ① 다량의 화염병과 세녹스가 망루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망루로의 진압 개시
 - ② 유류화재에 대비책 미비
화학소방차는 망루 전소 이후에 현장에 출동했고 사용되지 못했다.
 - ③ 안전매트, 그물망, 에어매트 미설치.
남일당 건물 북쪽으로만 안전매트 몇 개 설치하고 그 외에 미설치.
- 3) 경찰의 업무상 중과실- 진압 시 안전수칙 및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
 - ① 계획한 안전대책이 거의 실행되지 않았다.
 - ②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에 명시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 점거농성 상황의 경우 진압을 자제' 해야 한다는 내용 무시하고 진압을 강행.
 - ③ 경찰청이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명시된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 원칙을 무시하고 진압을 강행.
 - ④ 컨테이너로 망루를 여러 차례 타격하여 망루안의 철거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

⑤ 경찰특공대는 1차 진입시 망루 안에 세녹스, 화염병 등 다수의 발화원(發火源) 및 위험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특히 6시58분, 7시 6분에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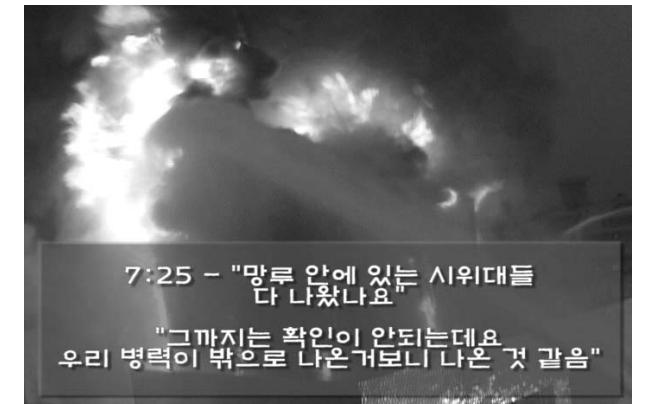
으로써 고도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경험했다.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 대형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다량의 발화원 및 위험원을 제거하고 최대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망루 내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 및 진압 작전을 잠정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진압을 강행

- 용산화재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찰의 '위법한' 과잉 진압이 주요원인이고 따라서 철거민의 사망에 대한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한다.

3. 경찰의 과잉진압과 철거민 등 사망과의 인과관계

〈검찰조사결과〉

- 화재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 + 화염병 투척"이라는 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특공대의 진압작전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문제점

- 특공대 투입과 농성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화재 및 사상의 결과'가 경찰이 객관적으로 지배 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사망 등에 대한 예전 가능성 및 사망과 주의의무 위반과의 상당인과관계 존재한다.

① 경찰특공대가 옥상을 완전 장악한 후, 철거민들은 망루 안으로 대피하였으며 철거민들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

② 경찰특공대는 망루 안에 화염병, 세녹스가 다량 존재하는 것을 인지했고, 특히 6시58분, 7시6분에 두 차례에 걸쳐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고도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③ 매뉴얼에 따른 발화원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망루 안으로 진입 및 진압을 강행하던 중 7시 20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07:25분경 망루 전체로 화재가 확산.

④ 화재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진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화재로 인하여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망과 발화원 및 위험원 사전 제거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사망에 대한 예전 가능성도 존재함.

⑤ 또한 다수의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과 그로 인한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부상에 대한 예전 가능성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결국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한다.



4.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책임

<검찰조사결과>

-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작전을 지휘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 무전기 꺼놨다는 답변에 대해 무전기 로그인 기록이 24시간만 저장되는 시스템이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음.

■ 문제점

- 검찰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진압작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압을 최종적으로 결제한 김석기 청장에 대해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혐의가 있으면 소환조사하겠다며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가 김석기 청장의 진술서를 그대로 수용해 결과를 발표했다.

- 대법원은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고, 선임감독상의 과실 또는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결과 발생의 현장에 없던 자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 진압 당시 무선 상황을 총괄한 이송범 경비부장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실질적인 경찰 총수이자 진압을 최종적으로 결제한 김석기 청장에게도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 지휘관들의 안전한 진압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잘못이 있다.
- 김석기 청장은 진압개시 전과 진압완료 후에 현장지휘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집무실에서 무전기는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켜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으나 통상 중요작전 상황에 무전기를 켜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자 관리감독을 해태한 증거에 해당한다.
- 결국,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진압 현장에 없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 한다.

5. 화재원인

〈검찰조사결과〉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 부근에 시너를 쏟아부은 후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가 화염병을 아래로 투척, 망루 내부 3층 계단부근에 화염병이 떨어져 발화됨.

■ 문제점

- 검찰은 처음부터 농성자들의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단정 짓고 수사를 진행했다. 화재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 화염병에 의한 화재라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1) 화염병에 의한 화재 증거 불충분

- ①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시너를 뿐만 아니라 불명확하다.
 - 검찰이 제시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동영상의 액체는 물대포에 의해 쏟아지는 물인지, 아니면 유류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통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다.
 - 결정적으로 김찰은 망루 내 농성자나 경찰 특공대원으로부터 “망루 계단으로 시너를 부었다”거나 “붓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받아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 ② 설명 그 액체가 유류라고 하더라도 유류를 부었다는 사실만으로 발화원이 될 수는 없다.

2) 다양한 화재원인

- ① 유증기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망루 지붕까지 치솟는데 이는 서서히 진행되는 화재가 아니라 폭발로 보인다”, “시너를 화염병으로 옮기면서 유증기가 발생, 공기 중에 쌓여 있었던 것 같다.” (검찰 참고인 조사 / 용산소방서 관계자의 진술)
- ② 발전기 작동 및 살수로 인한 누전 가능성
 -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가 망루로 진입할 무렵까지 망루 2층에 설치한 발전기가 작동되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발전기가 물에 젖어 누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③ 경찰특공대 진압시 소지한 진압 물품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한 확인 필요
 - 화재 직전, 경찰특공대가 장악한 망루 3단에서 고성능 랜턴 또는 어떤 특정한 경찰 장비가 사용되었다.
 - 경찰 장비에 대한 증거제출 요구에 대해 경찰은 차일피일 미루며 증거 은폐의혹을 높였다.

3) 화재 발생 직전 발생한 원인 불명의 가스 등의 실체와 화재의 연관성

망루 농성자들은 화재가 나기 바로 직전, 원인불명의 가스에 의해 완전히 무기력한 상

태에 빠졌다. 이 가스가 발화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망루 농성자들의 탈출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가스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된 농성자들이 마지막 발화원인으로 추정하는 화염병을 던져서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6. 전철연 배후설

〈검찰조사결과〉

제3자인 전철연이 망루농성에 배후로 개입하여 폭력시위로 발전함.

■ 문제점

- 용산화재참사의 원인을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그 배후로 전철연의 폭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철거민들이 망루에 오른 이유는 대형건설사와의 철거계약으로 경찰의 비호를 받았으며 온갖 횡포를 자행하는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맞설 힘이 모자라 요새를 만들고 화염병을 들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음
- 전철연은 지역철거대책위가 가입한 철거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며, 용산4지구 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도 전철연에 가입함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 상급조직이다.
따라서 전철연은 자신의 회원조직인 용산4지구 철거대위의 강제철거에 맞선 투쟁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철거용역업체의 불법행위

〈검찰조사결과〉

- 용역이 건물 내에서 불을 피워 농성자들에게 연기를 올려보낸 행위와 경찰과 합동으로 농성자들에게 물포를 쏜 행위에 대해 폭행으로 기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점거를 제지할 목적으로 불을 피운 것이기 때문에 고의는 없으므로 방화죄는 적용하지 않음.
- 경찰이 진압작전을 개시한 이후에 용역회사 직원이 참여한 사실은 없음.

■ 문제점

- 수사초기부터 용역의 폭력과 경찰과의 합동 진압작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묵살해오다 언론의 공개에 밀려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도 최소한으로 책임을 물었으며 경찰과의 합동작전에도 용역의 불법만을 인정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 1) 사람이 건물의 윗층에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질식시킬 목적으로 건물 아래층에서 불을 놓아 연기를 피어 올렸다.
 - 현존건조물방화죄, 폭행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 2)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위력을 행사한 행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 3) 경비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사인 건설사와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비업법위반죄 성립

4) 경찰과 합동으로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

-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행사되었다면 경비업법위반죄, 그리고 폭행으로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5) 경찰을 뜻하는 "POLICIA"라는 표기의 방패를 사용함

-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

6) 경찰과 용역의 합동진압작전에서의 경찰의 책임

경찰권 행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경찰과 용역이 합동작전을 한 것은 경찰이 용역의 물리력 행사를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며, 용역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무가 아닌 진압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죄도 성립

또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2)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을 하는 삼성물산 등은 호람, 현암의 직원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람, 현암의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시킨 범죄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삼성물산 등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9. 이성수씨 등의 사망경위에 대한 축소·은폐수사

■ 문제점

검찰은 이성수씨의 망루에서의 탈출 자체를 부정하고 목격자인 지석준의 진술을 허위인 것으로 발표했다. 지석준의 진술에 의해 망루를 탈출한 것으로 확인된 이성수, 윤용현의 사망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 부재로 사인의혹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다.

8. 시공사의 책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됨.

■ 문제점

1)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이 행하는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업무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위업체는 경비업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이다. 만일 삼성물산 등이 위업체에 철거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면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



故 이성수 故 윤용현 故 이상림 故 양회성 故 한대성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